

영등포구의회  
제18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6. 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65호로 2015년 5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 내용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 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기존 100% 감면에서 2016년 말까지는 75%, 2018년 말까지 50% 감면(안 제2조)
-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2014.12.31로 종료되어 조례에 위임된 ‘객실요금 할인율’ 감면요건 규정 삭제(안 제10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정비사항 반영

조문 제목의 ‘직접사용의 의미’를 ‘직접사용의 범위’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내용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12조)

다. 인용조문 변경

-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인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인용 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변경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인용(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요율을 현행조례에서는 종료기한 없이 100%로 하였던 것을 2018년까지만 일몰제로 운영하되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50%까지 축소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종료기한	경 감 율
2016.12.31.까지	75%
2017.1.1~ 2018.12.31	50%

현재, 우리구에는 감면을 받고있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은 없음.

-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100분의 50)과 특1·2등급 관광숙박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100분의 25)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2014.12.31. 종료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감면기준의 하나인 외국인 관광객 객실요금 인하율 조문은 실효성이 없어 이를 삭제 하려는 것이며,
  - 위의 특례조항으로 인하여 우리구에서 2014년도에 관광호텔업 및 관광숙박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금액은 총5건에 69백만원 이었으며 금년도에는 상당액의 금액이 구수입으로 확보될 예정임.
- 최근 복지수요 증가 및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비과세·감면 축소 대상 및 감면 종료 대상을 발굴하는 등 세수증대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31.>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2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

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용역일 것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 및 입국 장소 등이 적힌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代金)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2. 외국인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